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에 추진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 2021.7.1 ~ 2022. 6.30 (1년)

신고 목적 각종 오염원(노로바이러스, 중금속,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신고시설로 등록되면 수질검사 주기마다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 (☎454-5455)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 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구분

구 분	생활용수	농·어업 용수	공업용수	비 고
	가정용.일상생활	농.임.축산.수산업	공장.생산업체	
허 가	100m ³ /일 초과 (관경 40mm초과)	150m ³ /일 초과 (관경 50mm초과)	100m ³ /일 초과 (관경 40mm초과)	지하수영향조사서
신 고	100m ³ /일 이하 (관경 40mm이하)	150m ³ /일 이하 (관경 50mm이하)	100m ³ /일 이하 (관경 40mm이하)	국방.군사용.비상급수용. 재해등 대비용

※ 양수능력합산 : 기존시설 양수능력증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시설설치, 50m이내 동일인이 2개이상 설치(지하수 부족분을 채우는 목적)

■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절차

자진신고 기간 하수와 자진신고	자진신고 후 지자체등록. 신고필증 교부	사 용 공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
		불 용 공 폐공처리	

■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 제 1호 관련), 제 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 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